

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. 10. 30 선고 2022가단1595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B

피 고 1. C

2. D

3. E

4. F

5. G

6. H

7. I

8. J

9. K

10. L

11. M

12. N

13. O

14. P

15. Q

16. R

17. S

18. T

19. U

20. V

21. W

변 론 종 결 2024. 9. 25.(피고 F, L, M, N, O, T, U, V, W에 대하여) 2024. 10. 30.(피고 C, D, E, G, H, I, J, K, P, Q, R, S 에 대하여)

판 결 선 고 2024. 10. 30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피고별 각 해당 소유지분에 관하여 2000. 2. 4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F, L, M, N, O, T, U, V, W :

자백간주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나. 피고 C, D, E, G, H, I, J, K, P, Q, R, S :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조현락

별지